2007.08.03.(금)
제137회 제2차 본회의

심 사 보 고 서

○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기획예산팀)

자 치 행 정 위 원 회

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. 7. 18. 제 천 시 장
나. 회 부 일 자 : 2007. 7. 19.
다. 상 정 일 자 : 2007. 7. 23.(제137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)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 설명자 : 기획예산팀장 윤종철)

가. 제안사유

○ 「지방재정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"지방재정법 제 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"를 "「지방재정법」 제 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"로 함(안 제1조).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석윤)

○ 본 조례안은 우리시가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,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현행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 제1조의 내용 중 "「지방재정법」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"를 "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(공공기관의 범위 등)로 근거법령을 개정하는 것이며

○ 입법예고가 생략되어 있는 바, 행정절차법 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는 같은 조 ①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"법령 등을 제정·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.

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."라고 한 바,

○ 제1호 "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·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"와 제3호 "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"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행정절차법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4. 질의답변 요지

가. 질의요지

○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현 우리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요? (박성하 의원)

○ 상위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?(박성하 의원)

○ 아직도 상위법과 상충한 조례가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은 모두 취합하여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바랍니다. (박성하 의원)

나. 답변요지 (기획예산팀장 윤종철)

○ 그렇습니다.

○ 2005년도에 바뀌었습니다.

5. 소수의견

없 음

6. 토론요지

없 음

7. 심사결과

"원안가결"

8. 심사보고 붙임서류

○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.